

(별지 제1호 서식)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성인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성인학원(호남대학교)의 2019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성인학원(호남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3. 학교 관련	1	11,176,450원		
4. 부속병원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계	1	11,176,450원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성인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 2. 호남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 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0년 4월 8일

학교법인 성인학원

감 사 박형봉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4230호)

감 사 홍상래

※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2020년 04월 08일

학교법인 성인학원

이 사 장 박 기 인 (인)



피감사 기관장

2020년 04월 08일

호남대학교

총 장 박 상 철 (인)



(별지 제1의1호 서식)

학교법인 성인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9 년 3 월 1 일부터 2020 년 2 월 29 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

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
- 법인 일반업무 회계 : 지적사항 없음
- 법인 수익사업 회계 : 지적사항 없음
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

피감사기관장 **학교법인 성인학원 이사장 박기인** 직인(사인)



(법인 일반업무회계 · 수익사업회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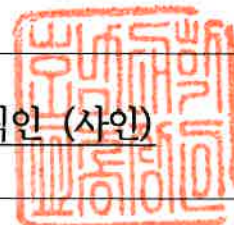
(별지 제1의2호 서식)

호남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9 년 3 월 1 일부터 2020 년 2 월 29 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<p>◎ 교비회계 :</p> <p>1.기금이자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금 관련기금 미예치 -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적립 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, 건축적립금, 장학적립금 등으로 구성하며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 리하고 그 적립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 어 있음에도, -각종 기금의 예금이자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를 환급받아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한 다음 해당 기금에 재예치하지 않음.</p>	<p>1.조치사항 -2015~2018회계연도중 기금의 예금이자에서 원 천징수된 법인세 환급분 11,176,450원을 해당기금 별로 재예치 처리함.</p>
<p>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피감사기관장 <u>호남대학교 총장 박상철 직인 (사인)</u></p>	



(교비회계·부속병원회계)
 <監査報告書·表紙>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(별지 제9호서식)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성인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성인학원의 2019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성인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성인학원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0년 04월 08일

학교법인 성인학원

감 사 박형봉

감 사 홍상래

박형봉
홍상래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법인실장

성 명 황용선

황용선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(법인 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성인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남대학교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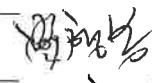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호남대학교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0년 04월 08일

학교법인 성 인 학 원

감 사 박 형 봉

감 사 홍 상 래


(인) 홍상래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기획처장

성 명 이 성 오

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